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③ 은행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‘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관련인정보’ 및 공공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고, <u>은행이 정한 전자어음 발행거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</u> 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제15조(이용의 제한) ~ 제37조의3(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) (생략)</p> <p>제38조(정보제공·활용 동의) ① ~ ② (생략)</p> <p>제39조(면책) ~ 제44조(재판관할 및 준거법) (생략)</p>	<p><u>3. 이용자가 사망, 파산, 폐업,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 약관에 따른 전자어음거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③ 은행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‘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관련인정보’ 및 공공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고, <u>제2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</u> 이 전자어음 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⑤ (좌동)</p> <p>제15조(이용의 제한) ~ 제37조의3(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) (좌동)</p> <p>제38조(정보제공·활용 동의) ① ~ ② (좌동)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, 은행은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제39조(면책) ~ 제44조(재판관할 및 준거법) (좌동)</p>	<p>- 추상적·포괄적 계약 해지 조항 구체화</p> <p>-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조항 신설</p>